매미모의 개념과 유형

대가(보상) 없이 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(의뢰인)을 위하여 난자나 자궁을 제공하는 여성

혼인 여부	대가 유무	제공 대상	수정 방식	대리모 유형
미혼	무상	난자	-	유형 1
		자궁	체외수정	유형 5
			(체내)인공수정	-
			체내수정(성교)	-
		난자와 자궁	체외수정	유형 2
			(체내)인공수정	유형 3
			체내수정(성교)	유형 4
	유상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
기혼	무상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
	유상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	(위와 같음)

대리출산의 쟁점

- 난자 또는 자궁 제공의 허용 여부
 - 메기를 받는 경우 모성의 상품화 우더
- 대리모가 친모가 되는지 여부
 - 대리모의 천모 주장 기능성 (자궁을 제공한 대리모의 아이에 대한 친밀감)
 - 혈연관계에 있는 데리모의 경우 (난입또는불인인딸을위한엄마의데리출산))
 - 의뢰인의 인수 거부(의뢰인의사망·이혼, 매리모의 장애아출산등사정변경) 또는 매리모의 인도 거부

대리출산에서 문제되는 인권

- 1. 대리모의 인권
- 2. 의뢰인(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사람)의 인권
-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권(결정권)
- B 해당 여성의 지발적인 결정(동의)이 필수적
- 매기가 개입될 경우 결정(통의)의 지발성에 문제
 - 계약의 자유
 - #계약의 내용이 문제
- → 유상계약의 허용여부(난자의 때매, 자궁의 임대) / 대리모의 혼인여부 / 생식방식의 제한 / 계약 불이행시 (이동의 인수 -인도 거부나 유상계약의 경우 비용 미지급 등) 이행강제 방법

대리출산에서 문제되는 인권

- 1. 대리모의 인권
- 2. 의뢰인(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사람)의 인권
- 지녀를 기질 권리
- 일반적 지유권을 의미하는 행복추구권(헌법제10조제1문후단)을 근거 로도출할 수 있는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(헌법제37조제1항)
 - 의뢰인의 범위 문제
- 혼인한 부부로서 배우자인 여성의 난자나 자궁에 문제 가 있어 임신이 불기능한 사람들(불입부부)이 대부분
- → 임센 기능부부, 목센 남성 및 여성의 지녀를 기질 린리

대미모의 허용여부

- 1. 모성의 완전성에 대한 엄격한 이해
- 2. 모성의 완전성에 대한 완화된 이해
- 천모가 되려는 의제, 난자의 제공, 자궁의 제공 모두가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모성
- 친모가 되려는 의제가 없는 난자 또는 제공의 제공은 모성의 완전성을 피괴
- 대리모계약은 "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사항"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 (민법제103조)

대미모의 허용여부

- 1. 모성의 완전성에 대한 엄격한 이해
- 2. 모성의 완전성에 대한 완화된 이해
- 친모가 되려는 의제, 난자의 제공, 자궁의 제공 중 일부만 있어로 모성을 인정
- 데리모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, 임신·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퇴인의 지녀를 기질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
- 데리모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

- 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 (계속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2,3,4)
- □ 유전학적 친모
- 유전학적 부모가 법적 친부와 친모가 되는 원칙
- → 정자제공자와 난자제공자는 법적 혼인 가능 관계
 - □ 법적 친모의 결정 : 출산모(생물학적 모)와의 관계
 - 출산한 여성이 친모로 추정되는 원칙
- → 대리모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(민법제865조제1항)

매미모 유형별 법적 쟁점

- 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2,3,4)
- □ 유상계약의 허용여부
- 매가없는난자나지궁제공요구의 현실적 어려움
- · 데리모의건강및일상생활상부담에대한금전적보상필요

[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] (시행 2013.3.23. 법률 제11690호)

누구든지 급전,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매급부를 조건으로 배이나 난자 또는 정지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23조제3항).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(제66조제1항제4호).

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

- (계속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2,3,4)
- □ 생물학적 친모
- · 출산할 때까지 아이와 신체적 · 심리적으로 교감
- · 출산한 여성의 친모 추정 원칙, 법적 친모 주장 기능
 - → 정자제공자와 법적 혼인 기능 관계
 - □ 법적 친모의 결정 : 의뢰여성, 난자제공자, 자궁 제공자(출산대리모)가 모두 다른 경우 (계속)
- 출생한 자녀의 관점에서 어떤 친모에게 양육 받는 것
 이 자녀의 복리에 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

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

- (계속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2,3,4)
- □ 법적 친모의 결정 : 의뢰여성, 난자제공자, 자궁 제공자(출산대리모)가 모두 다른 경우
- 현행 가족법에 따른 친권자 결정
- ① 부부가 미혼의 출산대리모에게 의뢰한 경우
 - 8 정자제공자(의뢰남성)의 인지→ 출산대리모와 단독
- 친권자 협의→ 배우자(의뢰여성)의 입양
- ② 부부가 기혼의 출산대리모에게 의뢰한 경우
 - B 출산대리모의 남편에 의한 천생부인의 절차 필요

- 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2,3,4)
- □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
- 의뢰인은 양육권자 지정청구 및 이동인도청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기능성
 직접강제보되는 긴접강제
- 출산대리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
 - → 의뢰인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
 - □ 의뢰인이 출생자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
- 데리모는 생부인 정자제공자(의뢰인)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, 직접 양육시 양육비 청구소송

- 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1)
-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5, 출산대리모)
-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(유형 2,3,4)
- □ 유전학적 친모 & 생물학적 친모

반지만을 제공하는 대리모와 자궁만을 제공하는 대리모가 결합된 형태

□ 생식방식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

정자제공자나 매리모가 기혼자인 경우 성교를 통한 체내수정 방식(유형 4) 금지의 필요성

대리모 관련 입법의 필요성

- 가족법의 기본적인 가정과 원칙
- · 임신 · 출산 방식

남녀의 성교를 통한 임신 - 출산을 기정

• 친자관계의 확정 원칙

출산한 여성을 친모로 추정 / 그 상대방이 남편인 경우 친부 추정, 남편이 이닌 경우 인지로써 친부 확정

- 입법이 필요한 사항
- 대리모계약의 효력 유무
- 대리모계약의 이행방식
- 대리모에 의한 출산에서 친자관계 확정

且是

- 1. 대리모는 허용될 수 있는가, 특히 대가를 받는 대리모는 허용될 수 있는가?
- 2. 대리모는 출산한 아이의 친모가 될 수 있는가?
- 3. 대리모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가? 아니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한가?